

하의삼도 농민들의 토지 항쟁사

이 문 평(목사, 전남 신안 하의중앙교회)

1. 들어가는 말

400년 하의도(전라남도)역사는 이 지구상에 들도 없는 처절한 민초(民草)들의 땅 되찾기 항쟁사이다. 이 지구상에 땅과 관련하여 이렇게 한 서린 일이 있겠는가 싶다. 그 암울했던 시기, 그래서 가난했고, 배우지도 못했지만 하의도의 선조들은 강자들의 착취와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줄기차게 항쟁하였다. 어떤 이는 선조들의 이런 항쟁 정신의 힘은 '오로지 정의감과 책임감이 아닐까' 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의도 땅은 변함 없이 하의도에 그대로 있는데 강자와 험잡꾼들에 의해 땅 주인이 아홉 번이나 바뀌는 웃지 못 할 수난과 수탈을 당했다. 이런 과정에 하의도 선조들은 땅 되찾기 항쟁을 계속하면서 굶어 죽기도 하고, 참혹한 삶을 견디며 항거하여 선조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항쟁의 불씨를 이어 왔다. 이러한 정신은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으로 그 정신이 승화하였고,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 모토가 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박호재의 장편소설 『눈뜨는 섬』 상·하권을 읽고서 하의도에 이런 숭고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은 이미 발표된 글들(논문, 회지 등)을 모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2. 조선 후기 하의삼도와 정명공주방(貞明公主房)

1) 정명공주(貞明公主房)의 하의도 농지 절수

하의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는지 명확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현재 주민들의 족보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후 1630년경부터 각 성씨(入島組)들이 영암, 해남, 강진 등지에서 옮겨와서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의도 각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잠자고 있던 벌판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고 농사지어 자급자족하며 살았다. 그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이 섬에 400년 고난의 씨앗이 잉태하였으니.....

조선조 14대 선조왕(1552-1608)이 딸 정명공주(1603-1685)에게 하의삼도 농지 20결(結)에 대한 세미(稅米)를 4대 손까지 받아먹도록 해 주었다. 1623년(인조 1년)에 정명공주가 홍주원(洪柱元, 1606-1672 영안위에 봉함)과 결혼함으로써 정명공주방이 영안위방(永安尉房)으로 고쳐 불리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2) 풍산 홍가네의 강권으로 일토양세(一土兩稅)징수 강행

정명공주의 4대손 홍석보(洪錫輔, 1672-1729)가 죽은 후에는 세미를 정부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홍가네 후손들은 하의삼도 전체 농지에 대한 절수권(국가 대신 세금을 받는 권리)을 받았으면서 총면적 160결에 대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해 감으로써 세금을 이중(二重)으로 물게 되는(一土兩稅)라는 기상천외한 일이 하의도에서 벌어졌다.

3) 풍산 홍가네의 폭압과 하의도 농민의 저항운동

하의도 농민들은 한 농지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수탈 당함으로써

너무도 억울하여 행정기관에 시정건의, 진정, 탄원을 하였으나 홍가네 후손들이 계속 높은 벼슬을 하여 민원을 차단시켜버림으로써 번번이 묵살 당하고 말았다.

1723년(경종 3년)에는 하의도 농민들이 한성부에 경조제소(京兆提訴, 행정소송)를 하였으나 농민들이 제출한 2백장이나 되는 문서를 자세히 검토하여 백성들의 억울한 곡절들을 파악해 보지도 않고 토지문서에 관인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기각)시키고 말았다.

1730년(영조 6년) 12월에는 계유년 경조제소 후 7년을 기다려도 조정에서는 해결을 해주지 않고 홍가네 졸개들의 꺾박은 기승을 부리므로 또 다시 행정소송을 한성부에 접수하였던 바, 사간원에서 섬사람의 억울한 참상을 참작하여 전라도 감사로 하여금 이 행정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바르게 판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임금님께 건의하여 임금님의 윤허(允許)를 받았다. 그러나 전라도 감사도 홍가네의 권세에 눌려 38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고 하의삼도 농민들의 고통은 계속되어야 했다.

1768년(영조 44년) 10월 5일 하의삼도 농민들은 또 다시 탄원서를 한성부에 제출하였다. 당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임금님께 “한 농지에서 홍가네가 결당 쌀 40말을 징수해 가고 관에서 전세와 대동미 23말을 징수하고 있어서 일토양세가 시정되지 않고 있으니 해피한 일입니다. 전라도 감사로 하여금 사실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하였던 바 임금은 엄격히 시행토록 하라고 윤허하였다. 그러나 당시 전라도 관찰사는 홍가네 후손인 홍낙인(홍봉한의 아들)이었으므로 시행되지 않고 무산되고 말았다.

4) 정조(1776-1795)대에 신문고 치고 왕에게 직접 호소

일토양세의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온 하의도 농민들은 억울한 사정을 행정기관에 탄원하여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추진하였다. 주민대표로 윤세민(尹世敏), 김호건(金好建)

을 선발, 탄원서와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서울에 가서 신문고를 쳐서 임금님께 직접 호소하였다. 정조는 탄원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홍가네는 나라를 속이고 하의도민을 착취한 죄가 꽤심하니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고 도민에게 무명 잡세를 일체 혁파하는 어제(御題)를 내렸다.

그러나 이에 격분한 홍가네는 노복 5-6명을 시켜 길목에서 하의도 대표들을 붙잡아 어제와 관계서류를 빼앗고 심한 고문을 하고 죄목을 씌워 함경도 변방 산수갑산으로 추방(귀양)시켰으니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실록이나 비변사 등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하의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의 구체성으로 미루어보아 실제 있었던 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일토양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홍가네의 악랄한 차단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5) 고종 때 하의삼도 농지의 농민소유권 인정

고종 때에 들어 홍가네의 세도가 약화되자 하의삼도 농민들은 1870년(고종 7년)전라도 감사 이호준(李鎬俊, 이완용의 양부)에게 억울한 사정을 진정하였다. 이호준은 홍가네를 불러 그 국법위반을 질책하고 하의도민 소유농지 120결(結)에 대해서는 세금을 절대 징수하지 말 것이며 24결에 대해서도 1결에 백미 20말씩만 받도록 판결해 주었다. 이 판결은 24결은 홍가네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낮추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하의도민들은 일토양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인조 때(1623년) 이후 하의삼도 농지소유권 문제는 고종 때(1870년)에 들어와 일단락 되었다. 이에 하의도민들은 전라도 관찰사 이호준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를 응곡리 소드랑섬 노변과 상태서리에 세웠다.

3. 한말 하의도 농민의 땅 되찾기 항쟁

1) 한말 내장원에 하의삼도 농지 귀속

1899년(광무 3년)에 내장원경 이용익(李容翊)은 하의삼도 농지를 흥가네 소유로 알고 내장원에 귀속시켰다. 내장원에서 백미수납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결당 8원씩 납부케 함으로써 농민들은 자기 소유 농지를 내장원에 편입시키는 부당한 처분을 당하였다.

1908년(융희 2년) 7월 하의도민들은 탁지부 및 임시 재산관리국 그리고 통감 등에 진정서를 내고 내장원에 귀속시킨 하의삼도 농지를 하의도민에게 돌려 달라고 호소하였다.

2) 홍우록(洪祐錄)의 농지소유권 주장과 소작료 강제 징수

하의삼도 농지가 내장원에 귀속된 지 5년이 지난 뒤 1904년 러일 전쟁과 1905년 을사조약이 있었다. 이를 계기를 내장원경 이용익이 사임하고 친일파 이완용이 총리대신으로 등장하였다.

1908년(융희 2년) 3월 정명공주의 8대 손인 홍우록(육군 참위출신, 종로 상인)이 나타나 국유재산 조사국에 하의삼도 농지반환을 청구하였다. 홍가는 지도군청의 타케이(武井), 히라시마(平島), 토미니카(富永)등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허위로 두락문건을 작성하였다.

1907년 11월 12일에는 내장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하의삼도가 흥가네 사유지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9년 전 흥가네 소유 하의삼도 농지가 잘못 조사되어 내장원에 편입되었다는 주장이다. 조사국에서는 하의도민에게는 확인 절차 없이 흥가네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의삼도 농지 151결(結) 24부(負) 3속(束)의 소유권이 홍우록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하급증(下給證)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1908년 10월에 지도군수로부터 토지소유권 증명을 획득하게 된다. 이는 홍우록과 이완용의 협잡품이었다.

1908년(융희 2년) 9월 홍우록은 하급증을 거머쥐자마자 관권을 등에 업고 대리인 김예묵, 이학범과 일본인 하야랑등(下野浪登)등 폭력배 60-70명을 무장시켜 하의도에 보내어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내라고 강요하였다. 농민들은 이 농지는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당시 토지대장 및 양안 지세 수납부에 농민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음) 소작료를 낼 의무가 없다고 강력 저항하였다. 그러나 김예묵 등은 도조를 강제로 징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면장 김준열(金俊烈)은 구타당하여 10일 후에 사망하였고, 그들이 장총을 쏘아 농민 문경수(文京守)의 왼쪽 어깨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히고 목포로 철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홍우록은 직접 하의도민을 강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도군수와 경찰서장을 동원하여 하의도민을 압박하였다. 지도군수 채수강(蔡洙康)은 하의도 유지 17명을 군청으로 불러 화해를 종용하였다. 하의도민들은 권리상 쟁의는 훗날로 기약하고 관의 명령을 수용하여 수작료 1년 분 1,361원 18전 6리를 군수가 일시 보관하는 형식을 취하여 결국 홍우록에게 건넬 수밖에 없었다.

3) 하의삼도 농민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승소

1909년(융희 3년) 4월에 하의도민 대표로 김석찬(金碩燦), 이권문(李權文), 박공진(朴公振)을 뽑아 경성에 보내 홍우록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정식명칭, 損害賠償請求訴訟)을 경성지방 공소원에 제기하였으나 변호인들의 무성의로 패소하고 말았다. 도민 대표들은 일심 판결에 불복하고 변호사로 일본인 목미불지조(木尾佛之助)를 선임하여 경성고등공소원에 공소심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무려 3년을 끌어 1912년에야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홍우록은 하의도 농민에게 1,361원 8전 6리를 지불하라”는 판결과 함께 1909년도에 홍우록이 강제 징수한 도조의 반환을 명령하였다. 이 판결은 홍우록의 도조징수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형식이었지만 “역둔토 조사사업”에 의해 인정된 홍우록의 토지소유권을 법률적으로 부정하고 처음으로 ‘농민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었다.

하의도민들은 이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데 공이 큰 변호사 목미불지조와 그의 사무원 남만웅(南萬雄)의 공적비를 하의면 대리 앞에 세웠다. 지금의 면사무소 옆에 옮겨 놓았다.

4) 홍우록이 소송판결 직전에 하의삼도 농지를 팔아 넘기다.

하의도 농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홍우록은 자신의 억지주장 때문에 패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홍가는 하의삼도 농지 4백 31만여 평을 당시 한일은행장이었던 장안갑부 조병택(趙秉澤)과 땅부자 백인기(白寅基)에게 1만 5천 원의 헐 값에 재빨리 팔아 넘겼다.

조병택은 목포갑부 정병조(鄭炳朝)에게 5만 7천 원에 매도했고, 정병조는 일본 오사카의 대상 우콘 큰자에몬(右近權左衛門)에게 11만 5천 원에 팔았다. 그래서 하의도민들은 재판에서는 이겼으나 그때 농지는 이미 새로운 지주로 등장한 일본인 우콘에게 넘어가 있어서 그와의 싸움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4. 일제 식민지 시기 하의도 농민의 땅 되찾기 항쟁

1) 재판에 이기고도 내부 배신으로 우콘(右近權左衛門)에게 강탈당한 하의삼도의 땅

우콘은 재판에서 패소하자 하의도 땅 투자가 낭패를 보았다고 판단, 이 사태를 완전히 뒤집는 묘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사전에 목포재판소 재판장 오오타나 노부오(大谷信夫), 목포경찰서장 마츠이 노부스케(松井信助)등과 결탁하여 농민대표의 한사람인 박공진(朴公振, 상태서리)를 회유, 하수인으로 만드는데 주력하였다.

우콘은 하의도 전답에 대한 소유권만이 아니라, 산림과 택지 및 묘지의 소유권도 획득하려했다. 그는 박공진을 회유하면서 전답 1,500두락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로 약속하고 공작금 수 만원을 건넸다. 박에게 지시사항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의 승소판결문”과 “토지소유권 확인소송 위임장”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다.

우콘에게 매수당한 박공진은 우매한 하의도민들에게 “승소는 하였으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다시 해야 한다”고 달래어 상태 박씨 등을 중심으로 박응식(朴應植, 박공진의 7촌 조카)등 341명(당시 하의삼

도 농가 호수 1,500여호)으로부터 하의삼도 농지소유권 확인소송 위임장 날인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 제출하였다. 박공진은 하의본도(지금 하의도)농민들도 설득하였으나 어불성설이라고 거부당했다.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은 박공진의 조카와 이권문의 사위 문영준이 협잡 공모하여 입수하고 박공진을 거쳐 우콘의 손에 들어갔다.

목포지청에서는 하의도민들을 불러 하의삼도 농지를 우콘에게 매도하고 영소작권(永小作權)을 받으라고 회유하였다. 하의도 농민들은 일체 불응하였다. 박공진의 음모의 전말을 알게 된 하의도민들은 섬에 돌아와 하의삼도민대회를 열고 허무맹랑한 소송을 취하함과 동시에 도총과 총독부에 진정기로 하고 도민대표들이 목포에 나갔다. 그런데 1913년 7월 목포경찰서장이 도민대표들의 상경을 막고 도민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설득하자 이를 믿고 돌아오고 말았다.

한편, 목포지청 재판장 대곡신부(大谷信夫)와 목포경찰서장 송정신조(松井信助)는 결탁하여 도민대표들을 불러 만일 우콘측과 화해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패소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하의도민들의 소송 취하장 접수를 거부했다.

그리고 1913년 7월 개항 16주년 기념식 및 목포역 개통식에 조선총독 하세가와(長谷川)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민대표들이 총독에게 직접 탄원하기 위해 목포로 나오는데 목포경찰서장이 경비정을 동원 부하들을 직접 지휘하여 하의도 배를 막아 버렸다. 그래서 섬 대표들은 하의도에 돌아와 하의삼도민대회를 개최하고 이 일의 사단을 꾸민 박공진과 그 공모자들을 규탄했다. 박공진 등 배신자들을 섬에서 내쫓기로 결의했다.

다음 해 1914년 2월 진정운동이 무산되자 격분한 부녀자 단체인 내녀회(內女會) 회원 수십 명이 박공진에 동조한 이권문과 그의 사위 문영준 집을 파괴하고 상태서리로 건너가 박공진, 박응식 등 5-6인의 집을 파괴, 방화하였다. 박공진은 자기 집을 파괴한자들을 목포

경찰서에 고발해 버렸다.

1914년 2월 20일 이 사건을 빌미로 목포경찰서에서는 우촌과 사전 각본대로 전남북경찰과 일본 헌병군인까지 700명의 병력을 3척의 경비정에 분승하여 하의도에 상륙하고 농민 검거작전에 들어갔다.

경찰병력이 농민들을 위협하려는 찰라, 주먹 같은 뇌성, 폭풍이 뒤집히는 가운데 맨주먹인 농민들에게 총칼을 휘두르며 제갈홍빈(諸葛興彬)등 백여 명을 가옥파괴 죄로 체포하고 목포형무소에 수감했다. 재판소, 경찰서 등에서 화해를 강요하며 부녀자 소요사태를 확대 선전하므로 하의삼도민 1천여 명이 재판소에서 경찰서에 이르는 해안통 노변 양측에 술을 걸어놓고 노숙하면서 “화해결사반대! 승소판결문 되돌려 달라!”는 구호를 내걸고 농성하였다(전남지방 최대 농성 사건으로 취급되었음). 농성 중 재판소와 경찰서의 기물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여 하의도민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이러한 관권의 강요에 못 이겨 화해분위기가 성숙되므로 체포된 백여 명의 농민들은 석방되고 8명의 부녀자는 대구형무소에서 2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이 때 형을 받은 사람은 제갈홍빈(대리구장), 윤하태(대리, 제갈영범의 처), 문 씨(대리, 정재경의 처), 윤통심(대리, 오화선의 처), 공문옥(대리, 공명동의 고모), 윤오음(대리, 김양서의 처), 최문거의 모, 강순엽(대리, 최용도의 모, 정신이상으로 가석방)등이었다.

결국 관권에 못 이겨 화해가 성립되었다. 대리구장 이상섭(李尙燮)을 화해위원으로 하여 430명의 위임장에 도장을 받아 1914년 2월 28일 조사국에 제출하였다(실제 화해조서에는 원고 박응식 외 340명으로 되어 있음). 화해내용은 “토지는 우촌의 소유를 인정하는 대신 현 경작지의 영소작권을 인정한다. 소작료 납부가 우량한 소작자에게는 5년 후 시가의 9할 가격으로 매도한다. 이와 아울러 우촌은 소작인들을 위해 저수지 5개소, 간이학교 3개소, 병원 3개소를 개설하고 도로를 수선하며 도선 2척을 운영하고 농사자금 1만원을

연리 8%로 대부한다” 였다. 화해 성립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상대서 리 박남현(박공진의 6촌 종형)의 토지 1,500두락은 소유권을 복구하여 준다고 한 대곡(大谷)재판장의 공증증서가 나온 것이었다.

우콘은 하의삼도 농지소유권을 손에 넣은 후 화해조건 중 제10, 11, 12, 13항 등은 3년내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1916년 7월 화해조서 날인을 거부한 비조인과 농민들은 김응재(金應才)외 2인을 대표로 뽑고 김택현(金宅鉉)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목포지청에 제기하고 그 해 가을부터는 일체 소작료를 내지 않기로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의하고 내 땅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8년 3월에는 대구 복심원에 변호사 굴지상작(掘地常作)을 선임하여 ‘토지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16년 목포지청 소송과 1918년 대구복심원 소송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후 1919년 9월, 하의삼도 농지는 17만원에 일본 대의사 신파신장(神波信藏)을 거쳐 1920년 토쿠다 야시치(徳田彌七)에게 넘어갔다.

2) 토쿠다양행(徳田洋行)의 악랄한 억압과 하의도 농민의 처절한 저항

1919년 9월 토쿠다는 하의삼도 땅 431만여 평을 헐값에 거머쥐었다. 우콘으로부터 하의삼도 땅 매입과 소작료 징수상황을 소상히 파악한 그는 초장부터 하의도 소작인들을 철저히 짓밟기 시작했다.

우선 인력관리체제를 초강팀으로 구성하였다. 1920년 12월 토쿠다양행(徳田洋行) 지사(支社)를 목포에 개설, 전 육군헌병 소좌 미야자키 캔지(宮崎憲之)를 대리인으로 파견하고 토쿠다농장사무소(현 면사무소 자리)에는 전 헌병보조원 신기빈(申奇彬)과 전 순사 김영두(金榮斗) 등을 사무원으로 채용하였다. 또, 마름은 농민 중에서 고태진(高泰珍), 이상섭(李尙燮)등을 지명하여 ‘대리인→사무원→마름→소작인’이라는 소작인 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미야자키(宮崎)가 하의도에 부임하면서 행한 첫 포문은 “나는 육군

대좌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명령에 복종하라”라는 선전포고 같은 강경 발언이었다. 부임 후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이 목포경찰서 무장경관 20명과 집달리 무리배 등 60여명을 동원하여 소작료 체납자가산을 차압하는 것이었다. 소작인들의 세간을 빼앗아 목포로 실어 날랐다.

토쿠다는 우콘이 하의도 농민들에게 약속한 화해조서 중 6개항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도리어 미야자키로 하여금 소작료 체납자가산을 차압하고 구타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당시 농민들은 체납소작료를 징수하려면 우콘과 맺은 화해조서 6개항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였다. 미야자키는 “미수된 소작료는 받기로 했지만 6개 조건은 모른다”면서 체납소작료를 강제 징수하였다.

1921년 8월 미야자키는 자기 마름 고태진, 이상섭 등을 이용하여 부랑자 10여명에게 돈을 주고 피어서 소위 ‘하의삼도 평화기념비’를 2개나 세우게 하였다. 새 지주 토쿠다는 소작료를 특별히 감하여 농민들은 편안하게 되었다고 선전하였다.

미야자키는 사실상 우콘보다 소작료를 혹독하게 거둬들였다. 우콘은 논 1두락(斗落)에 벼 3.5말, 밭 1두락에 콩 1.5말이었는데, 토쿠다는 각각 벼 7말, 콩 3말을 징수하는가 하면 우콘은 1923년부터 소작료를 두락 수로 계산해 왔으나 토쿠다는 평수로 계산하였다. 말로는 수확량의 3.5할을 받는다고 했지만 황무지와 논두렁까지 면적에 넣어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6-7할이 되었다. 또 장부상으로 경작면적을 크게 늘려서 소작료를 수탈해갔다.

미야자키는 소작료로 6-7할을 거둬갔는데 그 중 1할을 마름 몫으로 떼어주는 미끼에 혈안이 된 마름들은 기를 쓰고 제 고장 농민들을 쥐어짰다. “종이 종을 부리면 식칼로 형문을 친다”는 꼴이 당시 하의도 마름들의 작태였다. 말 깨나 하는 유지들에게는 소작료를 감해주면서 회유하는 반면 농민들에게는 소작료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체납하면 가차없이 차압을 감행했다. 토쿠다는 명절이 되면 마름을 통해 유지들에게 일본 술 정종을 선물했는데 그래서 당시 하의도에

서는 정중병을 '토쿠다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하의도 농민들의 땅 되찾기 운동은 3.1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923년 하의도 농민들은 토쿠다가 하의도 농지를 판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러나 법정투쟁으로는 가망이 없으니 차라리 "제 땅을 되사버리자"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었다. 농민대표 9명은 총독부에 토쿠다양행의 화해조서 약정사항 불이행을 고발함과 동시에 하의도 농지를 22만원에 경작자들에게 반환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총독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1924년 4월에 이영환(李漢渙) 등 농민 670여명은 주민대회를 열고 하의삼도 농지의 유상 구입을 위한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첫째, 토지대금은 22만원으로 결정해 매수할 것

둘째, 도쿠다(德田洋行)가 매도를 거절할 때에는 최후의 결사적 행동을 취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것

셋째, 소위 구 지주 우콘 큰자에몬(右近權左衛門)에 대한 화해조건과 토쿠다에 대한 화해계약을 그들 스스로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도민도 이를 해제할 것

넷째, 실행위원은 김응재(金應才), 김형균(金亨均) 등으로 한다.

실행위원들은 즉시 각 방면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농민들의 유상반환운동에 대해 미야자키와 마름 이상섭, 김자욱(金子郁), 우자환(禹子煥) 등은 재차 농민 김경진(金京振) 외 6명을 이용해 농민 내부를 분열시키려 하였다.

즉, 토쿠다농장은

① 농경지 1두락 당 상토(上土) 50원, 중토(中土) 25원에 5년 연부로 각 개인에게 매각한다.

② 영농자금 2만원의 저리자금을 융자한다.

③ 소작료를 인하한다.

는 등의 조건을 농민에게 선전하였으나 이는 농민들의 토지구입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한편, 김응재는 한국인으로 총독부 학무국장을 역임한 이진호(李振鎬)를 만나 하의삼도 농지연혁을 설명하고 일본총리 가등(加藤高明)에게 선처를 교섭해 주도록 여비를 조달해 주면서 부탁했다. 이진호는 가등 총리에게 하의도 농지문제 선처를 부탁했고 가등은 토쿠다를 불러 일·선(日·鮮)융화를 해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질책하고 당장 하의도 농지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토쿠다가 변명하자 조사위원을 보내 조사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토쿠다는 대리인 미야자키에게 농민들의 민심무마에 주력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3·1운동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 농민단체 등 각종 민중모임이 속속 발족하고 있었고 하의도에서는 박동금(朴東金) 등이 소작인회 조직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소문을 입수한 미야자키는 박장환(朴莊桓), 김기배(金琪培) 등에게 소작인회 조직에 협력하겠다고 비용 8천원을 내놓았다. 1924년 5월 22일 '하의 소작인회'가 창립되었다. 회장은 박장환(1902-1965, 박응식의 아들)이, 부회장은 김기배(1900-1980)가 맡았다.

그래서 일본에서 조사위원들이 군수, 목포지청 판·검사, 경찰서장 등을 대동하고 하의도에 왔을 때 소작인회 간부들은 농민대표로 나서서 “지주와 소작인간의 알력이 심하고 불친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쿠다는 목포경찰서장과 결탁하여 소작인회 회장 박장환, 부회장 김기배, 간사 강신재, 최용도 등등 수십 명을 무조건 구속하였다. 한편으로 동경에 있는 상의회 부회장 박춘금 일파를 매수, 하의도에 파견하여 하의도 유지들을 협박, 구타하는 등 갖은 폭압으로 소작인회를 해산시켰다.

이상과 같이 3·1운동 이후 하의도 땅 되찾기 운동은 하의소작인회의 결성과 해체, 그리고 유상 반환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지만 토쿠다농장 측의 탄압, 회유책 때문에 모두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국내의 사정과는 다르게 1924년 오사카에 거주하는 하의도 출신 최용도, 고장명, 김주석 등 100여명이 하의농민회를 재조직

하고 일본농민회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하의면 대리에 일본농민회 하의지부 간판을 걸고 일본농민회 간부 아사이 미즈이(朝日見端), 변호사 후루야(古尾), 색천(色川) 등이 왕래하였고, 송야미(松野尾)는 2년 동안 주재하면서 농민운동을 지원하였다.

3) 하의 농민조합운동과 땅 되찾기 투쟁

악덕지주 토쿠다의 갈취와 탄압을 견디지 못한 하의도민들이 노동유민(遊民)으로 몰려든 곳은 토쿠다의 사업장인 토쿠다상회가 있는 오사카였다(1925년대 하의도 출신 근로자가 70-80명이었다고 한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선조들이 땅 흘려가꾼 고향 땅은 일본인에게 내주고 그 일본인의 경내에 가서 품팔이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 당시 하의도민들의 가슴 아픈 상황이었다.

1927년 최용도, 고장명 등이 주축이 되어 '하의 노동청년회'를 조직하고 친목을 도모하였다. 그 해 6월에는 노동농민당 오사카지부의 집행위원인 아사이 미즈이(朝日見端, 일명 朝日俊雄)선생에게 하의도 농민조합 조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 해 9-10월에는 최용도, 강성은, 김병안 등이 일본 노동농민당의 지원을 받아 하의 농민조합조직을 추진하였으나 토쿠다농장과 관헌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그 해 11월에 일본 노동농민당 대표 코가사다오(古賀貞雄)와 도쿄신간회 대표 강소천(姜小泉)은 하의도 현지 조사에 나섰고 더욱이 조선 공산당 사건의 변호를 위해 조선을 방문한 변호사 후루야(古尾)도 하의도 토지문제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하의도 토지문제는 하의도로부터 밀려난 하의도 출신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에 의해 조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 해 12월 27일에는 일본 농민조합 특별활동 위원인 아사이 미즈이((朝日見端), 동 조합 고문 이도카와 타로우(色千太郎), 동 조합 상무위원 니시나 유우이치(仁科雄一)등이 하의도 농민조합결성 지도차 하의도에 왔다. 그래서 1928년 1월 2일 하의면 대리 구학교에서 하의삼도 농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의농민조합이 창립되었

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앞으로 일치 단결하여 조선 전 무산계급의 모든 운동과 결합하고 전세계 무산계급의 절대적인 응원 하에 탐욕스러운 지주의 압박과 관헌의 간섭을 용감하게 돌파하고 열악한 소작제도로부터 해방되어 광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전진하자.” 고 천명하였다.

조합강령으로써 단결된 힘으로 농민생활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작조건 획득, 토지개량,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방법의 개선,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의한 농민의 문화적 생활의 완성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써 경작지 재측량 실시, 생산고 결정에 소작인 대표 참가, 불법적인 차압 절대 반대, 학교, 병원 및 기타 문화적 시설의 완비, 관개의 설비 완성, 체납소작료 전액면제 등을 설정하고 덕전농장 측에 요구하였다.

하의농민조합의 조직은 집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호부, 농사부, 교육부, 외교부, 선전부, 부인부, 회계부 등이 설치되었다. 조합간부로서 집행위원장 장정태(張正泰), 하인옥(下仁玉) 등과 선전부장 최용환(崔龍煥), 교육부장 고장명(高長明) 등을 선출하였다. 아사이 미즈이는 고문으로 추대하였다. 창립 시 가입회원은 800여명에 달하여 명실상부한 하의도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이 탄생하였다. 이와 같이 하의도 농민조합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국내외 농민운동가의 연대를 통해 조직되었다.

1928년 2월 2일에는 농민조합 집행위원회를 열어 토쿠다양행 목포지사와 소작문제에 대한 교섭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최용환, 고장명은 경작지 재측량, 미납소작료의 건, 소작료 검견시 소작인 대표 참가의 건을 논의하고자 미야자키 측과 일정을 협의하였다.

2월 17일 토쿠다의 초청으로 목포에 온 상애회 부회장 박춘금, 수행원 김용상(金鎔常), 등 일행이 목포 삼고야(三古野)여관에 쳐들어와 권총, 단도 등 흉기를 내놓고 최용환, 고장명에게 농민조합을 해체하라고 구타, 협박하였다.

2월 19일 오후 박춘금 일행은 목포경찰서 고등계 주임 장전(張

田)과 함께 하의 농민조합 사무실에서 아사이 미즈이, 고장명, 최용도, 하인옥, 최용환, 장정태 등과 대좌하였다. 박춘금은 농민 조합 해산을 강요하였다. 조합측은 “하의농민조합과 상애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손을 떼라”고 강력히 대응하고 나왔다.

한편, 박춘금이 토쿠다의 지원요청을 받고 하의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조합원 300명이 “저 놈 죽이자”하며 몰려들었다. 그때 아사이 미즈이가 군중을 설득을 하여 겨우 폭력사태를 모면한 채 박춘금 일행은 그 날 밤 목포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20일 아침 목포경찰서에서는 경비정 금강호, 착환 2척에 순사 20여명을 싣고 하의도에 출동하여 하의농민조합 간부 최용환, 고장명, 최용도, 하인옥, 장정태, 공유범, 우정운 등 6명을 검거하여 목포로 갔다.

또한, 2월 24일 최용도와 아사이는 비밀리에 서울에 올라가 지난 2월 17일 목포 삼고야 여관에서 하의 농민조합간부 고장명, 최용환이 상애회 박춘금과 회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당국에 고소하기 위해 김병로, 허 헌 변호사를 만나 변호를 위임하였다.

1928년 2월 말에 조선농민총연맹은 검사위원이자 암태도 소작투쟁의 지도자 박복영(朴福永)을 하의도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재일본 조선노동총연맹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하의도 토지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하의농민조합과 상애회의 충돌사건은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조선농민총연맹, 신간회 본부, 경성변호사단, 조선기자동맹 등 사회단체들도 진상조사를 위한 특파원을 3월 30일 하의도에 파견하였다.

하의도 농민운동사상 잊을 수 없는 인물은 일본 농민회의 아사이 미즈이(朝日見端)선생이다. 하의농민조합 창립이래 2년 동안 농민조합사무소에 머물면서 농민운동을 지도하였다. 그는 한복을 입고 농민들과 침식을 같이하며 여러 가지 활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지금도 하의도 사람들은 선생을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

1928년 10월 26일 광주지방법원은 소요와 치안유지법 위반혐의

로 구속 기소된 농민조합 간부 10명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최용도, 금찬배, 최옥중, 최용환은 각 6개월 징역, 최용채, 공유범, 하인옥, 공화범은 각 6개월 징역, 3년 간 집행유예, 고장명, 아사이는 각 무죄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 이후 하의도 농민들의 투쟁은 기가 꺾이게 된다. 그러나 하의농민조합은 4월 20일자로 '재대판 하의노동회'를 통해 일본농민조합전국대회에 토쿠다가 소작인을 탄압하는 잔악상을 담은 격문을 보냈다. 또한 1928년 5월 26일자로 일본 농민조합전국대회에 '폭압의 정보'라는 제목으로 토쿠다가 소작인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상황을 고발하는 호소문을 보내는 등 끈질긴 활동을 계속하였다.

1928년 8월 오사카에 있던 하의도 출신 노동자들은 토쿠다상회(徳田商會)앞에 '하의도토지회수동맹(荷衣島土地回收同盟)'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회수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 운동의 대표자는 윤상규(尹庠奎)로서 그는 관련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하의도에 다녀가기도 했다. 윤 대표는 "우리 도민의 손으로 일구어 놓은 토지를 어느 누가 아무 까닭 없이 빼앗는단 말이요. 현재 법률의 정수가 소유권 보전인데 어찌 침해를 당하고 말겠습니까,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회수되고야 말지요"라며 자신을 보였다.

1930년대에 들어 하의삼도에서도 총독부 방침에 따라 자작농 창정사업(自作農 創定事業)이 일부에서 진행되었다. 당시 윤길중(尹吉重) 무안군수가 토쿠다를 설득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상태서리에서 시도되었다. 이것은 농민에게 땅은 주고 땅값은 연부상환으로 소작료 정도를 내서 갚는 식으로 계획된 일인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가운데 해방을 맞이했다.

5. 해방 후 하의삼도 농민의 땅 되찾기 운동

1) 미 군정하 신한공사의 출현과 '3·1 소작제' 실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왔다. 일본의 악덕 지주 토쿠다는 떠나

갔다. 이제 3세기 기나긴 싸움이 끝나나 싶었다. 농민들은 조상의 땅을 되찾은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어느 날 일본인 악덕 지주 토쿠다농장 사무소에 '신한공사(新韓公社) 하의지부' 라는 간판이 내 걸렸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소작료를 받으러 나왔다.

해방과 함께 내 땅이 된 줄로 알았던 하의삼도 농지는 미국군정청 법령(1946년 2월 21일자 제 52호)에 따라 신한공사가 일제 하 토쿠다 소유의 하의삼도 전 농지를 접수하고 하의도 농민들에게 소작료 납부를 독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소작료는 일제 하에서 60-80%의 고율이던 것을 미군정청에서는 수확량의 3분의 1을 받도록 조치했을 뿐이다.

2) 하의삼도 농민의 소작료 불납동맹과 7·7 농민항쟁

군정청에서 제정한 '3·1 소작료'는 일제하의 소작료보다 낮은 것이었다. 그러나 하의도 농민들에게 소작료율을 낮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소작료를 납부하면 농지소유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의도 농민들은 '소작료 불납동맹'으로 똘똘 뭉쳤다. 신한공사 직원들은 1945년 7월초 농민들에게 몇 차례 소작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처음부터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1946년 8월 2일 소작료 징수를 위해 몇 차례 독촉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자 신한공사 직원들은 경찰관들의 협조를 얻어 소작료 합동 징수작전에 들어갔다. 제1조 7명은 오림리로, 제2조 7명은 대리로 떠났다. 이날 정오 경 오림리에 도착한 징수대는 김석철(金錫哲)씨의 집에 들이닥쳐 집을 지키고 있던 김석철의 부친 김농권(金弄權) 옹에게 소작료를 내라고 으박질렀다. 이에 김농권 옹이 "뜬금없이 무슨 소작료냐"며 의아해 하자 신한공사 직원과 경찰관들이 노인의 뺨을 때리면서 복부를 걷어차고 충기를 휘두르면서 폭언을 퍼부었다. 이 광경을 담 너머로 지켜보던 부락 청년들이 항의하러 달려들자 겁먹은 경찰이 공포를 쏘았는데 이게 주민 박종채(당

시 20세)의 머리를 스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쓰러졌다.

이에 더욱 분개한 오림리 주민들은 “저 놈이 사람 죽였다”면서 “저 놈 잡아라”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 자리에 운집한 군중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도망치는 징수반원들을 붙잡아 두들겨 분풀이를 하고 권총과 장총을 빼앗았다. 이곳에 집결한 20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3세기 동안 투쟁해온 내 땅 되찾기의 긴 역사를 되새기며 신한공사의 폭언과 폭행을 자행한 소작료 부당 징수에 대하여 밤늦게까지 항의하였다. 첫 유혈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날 오림리 농민항쟁은 ‘하의도 농민봉기’의 단초가 되었다. 같은 시각 대리에 도착한 신한공사 직원과 하의지서장 등 경찰들로 구성된 제2조는 10여명의 농민을 호출하여 김세배(金世培) 집에 모아놓고 소작료 강제징수를 위한 만행이 자행하고 있었다. 이 때 오림리 소식을 접하고 오림리로 합류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8월 3일) 오림리 농민항쟁 보고를 받은 목포경찰서는 무안, 나주경찰서의 병력지원을 받아 약 50여명의 경찰들이 증원되어 전날 오림리 사건에 대해 보복하였다. 오림리에 도착한 경찰은 주민 200여명을 사장공터에 잡아 놓고 개 패듯 보복타작을 하면서 전날 적극 가담자 10여명을 체포하여 하의지서로 끌고 왔다. 대리에서도 소작료 납부를 거부한 농민 6명을 체포하여 하의지서로 연행하였다.

그 날 오후 3시경 지서로 연행한 농민들을 목포경찰서로 이송한다는 소문을 듣고 웅곡리 선착장에 600여명이 구름같이 운집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경찰과 신한공사 직원들은 가족들과 체포한 농민 30-40명을 포승줄로 묶은 채 바다에 떠있는 여객선 강경환(江景丸)호에 승선시키기 위해 종선에 태웠다.

이에 후광리 농민 김지배(일명 전배, 당시 25세)가 자신의 동생 김응배는 아무 죄가 없으니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면서 강경환호로 접선하기 위해 종선의 밧줄을 풀었다. 이 때 강경환호에서 콩볶듯 총성이 울렸다. 김지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갯벌에 쓰러져 즉사했

고, 옆에 있던 김봉남이 다리를 움켜쥐고 벌렁 나자빠졌다. 기어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강경환호은 그대로 목포로 떠나갔다. 일제 하에서도 없던 총기 살상사건이 미군정 하 이곳 하의도에서 자행된 것이다. 그렇다. 스물 다섯 살의 농부 김지배는 아내 백옥단과 세 살난 아들 김연일을 남겨둔 채 미군정 하 경찰의 총탄에 살해된 것이다. 하의도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기상천외한 참상을 목격한 하의도민 600여명 군중은 분노와 울분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김지배의 시신을 들쳐 메고 주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경관들이 근무하는 하의지서로 몰려가 건물에 분풀이를 하고 불을 질렀다. 군중들은 이어서 신한공사 하의지부로 몰려가 일제하 악덕지주 토쿠다의 사무소에 불을 질렀다.

이날 밤 신한공사 하의지부에서는 봉화가 오르고 하의도 농민들은 면민대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김기배, 이길진, 장정태, 제갈호식을 면민대표로 뽑아 다음날 미 군정청에 항의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이 날이 음력 7월 7일이므로 하의도 농민들은 '하의도 7·7농민봉기' 또는 '하의도 7·7 농민항쟁' 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1946년 7월과 8월중에 하의도에서 일어난 소작료 징수관계로 벌어진 일련의 사건(7월17일 상대도 하곡 성출 방해, 8월 2일 오림리 농민항쟁, 8월 3일 하의지서와 신한공사 방화)에서 구속된 농민들에 대해 12월 1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의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징역 12년: 김세배(30세, 대리) 너무 고문을 당하여 인천 형무소에서 복역 중 사망

징역 3-7년: 이춘동(18세, 대리) 2년형을 살다가 병보석으로 출소한지 15일 만에 사망

징역 4년: 김희철(46세, 오림), 임창오(28세, 오림)

징역 2년 6개월: 정화진(22세, 대리)

징역 2년: 김용빈(34세), 최병술(23세), 최정만(22세), 윤인수(25세), 임경선(21세)등 오림

징역 1-2년: 금응수 (18세 오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임현옥(오림)

벌금형 5천 원: 박필순(30세, 상태서리) 등

그리고 하의도민을 무자비하게 강압 구타한 경찰관 신판수, 정정옥, 최윤달 등과 신한공사 직원 김산광 등에게는 방위책이라는 미명하에 무죄 판결하였다.

3) 미 군정청의 하의도 폭동진압작전

미 군정청은 하의도에서 일어난 농민 항쟁 사태를 '농민폭동사태'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폭동진압작전에 나섰다. 8월4일 목포경찰서 경관 50여명이 완전무장하고 7·7 농민항쟁의 시발지인 오림리로 출동하여 청년노소를 불문하고 20여명의 농민들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8월 5일에는 목포경찰서에서 20여명의 경관이 하의지소로 파견되어 증원된 무장경관 70여명이 대리 등지에서 농민 200여명을 추가로 체포하였다.

8월 6일에도 아침부터 무장경관 40여명이 하의도 각 마을 전체를 수색하여 농민 15-16명을 체포하였다. 무장경관들은 체포한 농민들을 꿰어앉히고 피혁대와 총신으로 때리고 주리를 틀어서 보복 응징하였다. 체포된 농민 중 90여명은 목포경찰서로 연행되고 당시 하의도 주민들은 인근 섬 등지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였다.

그리고 8월 8일, 미군정은 미 33보병중대 소속 쇼트버거 중위를 책임자로 20여명의 무장군인과 경찰관을 인솔하고 상륙하여 옹곡리 소재 하의초등학교에 주둔했다. 미군은 하의도 전부락을 순회하며 '3·1소작료' 징수의 정당성을 설명하였다. 쇼트버거 중위는 3개월 간 하의도에 주둔하면서 하의도의 기나긴 땅 되찾기 항쟁의 현지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미 군정청에 보고하였다. 결국 미 군정청은 하의도 농민들의 땅 되찾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한국정부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미군은 하의도에서 철수하였다.

6. 정부수립 후 하의삼도 농민의 농지소유권 해결 과정

하의삼도 농지소유권 문제는 미 군정이 종료되고 나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1949년 7월 농민들은 하의면민대회를 개최하고 무안군수와 전라남도지사에게 하의삼도 농지를 무상환원 해주도록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하였다. '하의삼도토지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이흥규, 부위원장에 홍완태 씨를 선출하였다.

7월 21일 전라남도는 하의삼도 토지투쟁위원회의 진정을 받아 들어 하의삼도 농지를 무상 환원해 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또한 그간의 억울한 농지투쟁사를 제헌국회에 탄원하였다.

한편, 1949년 8월 1일 국회산업분과위원회 유홍열, 황두연, 황숙현 의원과 농림부 농지국 지정과장 윤택중 등 일행이 하의도에 와서 귀속농지 1,500정보에 대한 국회차원의 현지조사를 계기로 하의도 농지문제는 다시 표면화되었다. 백발 노인들이 국회의원들을 붙들고 조선조 인조대인 1623년 이래 무려 325년 간 땅 되찾기에 항쟁한 우여곡절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국회의원들은 무상반환토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1950년 2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하의도 농지 무상 반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를 정부에 통고했다. 따라서 농림부 토지 행정청 귀속농지 관리국 이강덕을 1950년 5월에 하의도에 파견하여 개인별 경지 및 환원대상자를 조사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무상환원 작업은 중단되었다. 전쟁 후 1954년 3월 농민들은 재차 하의면민대회를 열고 하의도 농지 무상환원 이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였다. 1956년 에야 하의삼도 농지소유권 문제는 가닥을 잡게 되었다. 농림부가 정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당시 무안군 출신 유옥유 의원이 농림분과위원장이었으므로 중간 조정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

이미 1950년 2월 2일 국회에서 하의도 농지를 무상 반환하기로 가결하였으니 만큼 하의면민의 명예회복은 되었다고 간주하고 농민

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조정방안은 농지 가격을 최소금액인 정보당 200원으로 사정하여 적산을 구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수속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리가 느장을 부려 농민들은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많았다.

1993년 6월 16일에는 하의·신의면 농민 1239명이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 의장에게 토지소유권 등기이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당시 미등기 농지 5,121필지임).

그리고 그 해 11월 신안군의회에서는 하의삼도 상환 농지관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토지소유권 등기이전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2002년 8월말까지 아직도 등기되지 못한 미등기 건수는 하의 27필지, 신의 83필지 등 110필지에 이르고 있다.

7. 나가는 말

하의도 땅 되찾기 항쟁은 세계에서 가장 처절하고 오래도록 지속된 민중항쟁 운동사이다. 이런 숭고한 항쟁정신을 오늘에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남겨진 후손들의 과제이다. 비로소 이런 과제를 먼저 깨우친 몇몇 뜻 있는 이들이 1998년 발기인을 규합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음 해 1999년 11월에 『하의삼도 농지탈환 운동사』가 신안군에 의하여 발간되기도 하였다. 그 해 12월에는 사단법인 '하의삼도농지탈환운동기념사업회'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늦었지만 신안군비와 국비로 '하의토지역사기념관'의 건립도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기념공원 조성과 기념탑 건립도 빠른 시간 안에 하의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숭고한 항쟁사를 고취코자 2004년 6월 27일에는 하의삼도토지항쟁정신계승을 위한 강연회가 하의지역교회연합회(회장 이문평 목사, 하의중앙교회) 목회자들과 교우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유지들과 관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강연회는 땅이 있어도 내 땅이라 할 수 없었고, 풍년의 수확을 해도

배부름의 여유를 빼앗기고 살았던 선조들의 큰 아픔과 항쟁정신을 고취시키고,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는데 하의삼도 토지 항쟁과 관련한 강연회로는 최초의 강연회라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앞으로 하의삼도 농지탈환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걸맞게 충분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알려야 할 것이며,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기념사업들을 전국적인, 나아가 세계적인 규모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하의도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과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하의도를 토지항쟁의 역사적 성지(聖地)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다. 불의에 항거하다 억울하게 앞서간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여야겠고, 후손들에게는 자긍심과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난의 땅 하의도는 변함 없이 그대로 있는데 강자와 협잡꾼들에 의해 땅 주인이 아홉 번이나 바뀌는 옷지 못 할 수난과 수탈의 역사를 안고 있다. 고난의 땅 하의도는 이제 착취자들이 떠나고, 하의도를 삶의 터전 삼고 살아가는 민초들의 품에서 행복을 일구어 내는 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희망의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역사적인 땅으로! 農

〈참고문헌〉

- 『하의삼도 농지탈환 운동의 전개과정』 1999년, 손형섭, 박찬승
- 『일본인 지주의 하의도 토지수탈과 토지 회수운동』 1996년, 이규수
- 『서남해 도서지역의 농지분쟁 및 소작쟁의에 관한 연구(2)-하의삼도 농지분쟁을 중심으로-』 1986년, 김종선
- 『눈뜨는 섬』 (장편소설) 1993년, 박호재